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8. 4. 18 (금) 15:00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4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4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를 증대하고자 각종 첨단 분석 장비를 구비하였기에,
- 시험·조사 및 분석 업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,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시험·조사 및 분석의뢰 (안 제3조)

- 의뢰자는 신청서와 시험·분석용 검체를 연구소에 제출
- 시험·조사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 시는 설계서를 제출

나. 수수료 및 징수방법 (안 제4조)

- 수수료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
- 용역의뢰 수수료 : 용역의뢰 설계서상의 견적가격으로 결정
- 수수료 납부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

다. 수수료 면제(안 제6조)
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수산단체가 의뢰 시 수수료 면제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,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를 증대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구비하여, 각종 수산물 등에 대한 시험·조사 및 분석업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실정을 감안하여 합당한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